준법륜리의 본질과 역할

김 인 식

준법륜리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 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도 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준법기품을 확립하는데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공민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리행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중보판 139폐지)

준법이란 말그대로 법을 준수한다는 뜻 이다.

법은 사람들의 사회적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행동 질서, 규칙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된다.

준법륜리는 공민들이 국가가 제정한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 덕적행동규범의 리치이다.

법을 준수하기 위한 공민들의 활동에서는 인륜도덕이 작용하며 국가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공민들의 준법활동분야에서도 반드시 준법륜리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그것은 도덕이 사람들의 모든 활동분야에 침투되여있고 준법활동이 인간의 사회적활동의 한 형태이기때문이다.

법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필수 적수단이며 사회생활에서 무질서와 혼란 을 방지하고 사회적안정을 위한 필수적담 보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한 성원, 공민이 라면 마땅히 국가가 제정한 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어기는것은

국가의 한 성원, 공민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것이며 그것은 인륜도덕의 리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로부터 국가의법을 준수하기 위한 공민들의 활동에서는법을 어떻게 보고 대하며 그것을 어떻게 준수하겠는가 하는 도덕적요구가 나선다.

법을 준수하기 위한 공민들의 활동에서 나서는 이러한 도덕적요구를 반영한 행동 규범을 준법도덕이라고 한다.

준법도덕은 량심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게 된다.

량심은 사회와 집단의 성원으로서 사회와 집단앞에 지닌 도덕적의무에 대한 자각이고 책임감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존중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깨닫고 그렇게 하는것을 책임으로 느끼는마음이다. 량심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건말건 사회적행동규범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며 언제나 인륜도덕의 리치에맞게 행동한다.

준법도덕규범은 매우 다양하다.

준법도덕규범의 다양성은 우선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다양성과 관련된다.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에는 크게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그것을 각이한 사회생활분야에 구현한 구체적인 부분법들이었다. 이로부터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준수의 도덕규범과 그것을 구현한 구체적인 부분법준수의 도덕규범이 있게 된다.

준법도덕규범의 다양성은 또한 그것을 준수하게 되는 국가의 성원들, 공민들의 다양성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국가의 한 성원으로서 살며 국가가 제정한 법을 준 수할 의무를 지니고있는 일반공민들이 지 켜야 할 도덕규범과 국가의 법규범과 규 정을 직접 맡아 그 집행을 장악통제할 임 무를 지니고있는 사법부문의 공민들, 일군 들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 있게 된다.

모든 준법도덕규범들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가 제정한 법규정과 규범의 준수를 인륜도덕의 리치에 맞게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안정을 이룩하고 사회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것이다.

준법도덕규범은 국가의 모든 성원들, 공 민들의 활동과정에 체질화되여 그들의 고 유한 준법도덕품성으로 전환되게 된다.

준법도덕품성은 준법도덕규범을 반복하여 지키는 과정에 체질화, 신념화된 공고한것이기때문에 일단 형성된 다음에는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고 불리한 조건이 조성된다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으며 준법도덕규범을 스스로 지켜나가게 한다.

준법도덕품성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한 성원, 공민으로서의 도덕적책임 과 본분을 자각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담 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국가의 성원들, 공민들은 고상한 도덕 품성들을 지니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 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과정에 건전하 고 문명한 도덕적관계를 맺게 되며 공민 으로서의 도덕적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 게 된다.

준법륜리는 바로 국가의 성원들, 공민들이 지켜야 할 이러한 준법도덕규범과 준법 도덕품성, 준법활동과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국가와 공민들, 공민들호상간의 도덕적관계 와 도덕적행동의 리치를 밝힌것이다.

이로부터 준법륜리는 준법도덕규범과 준법도덕품성,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준수하는 활동과정에서의 도덕적관계와 도덕적행동 등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한 공민들의 모든 활동의 다양한 도덕적현상들의 리치를 포함하게 된다.

준법륜리는 철저히 계급적성격을 띤다. 준법륜리가 계급적성격을 띠게 되는것 은 법의 계급적성격과 관련되여있다.

사람들은 국가라는 사회적집단을 이루

고 살면서부터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규정과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라는 사회적집단을 유지하고 공고화하여왔다.

그런데 국가는 사회전반에 대한 일정한 계급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공고한 사 회적관계의 체계로 발생한것만큼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 법 은 그 형성의 초기부터 계급적성격을 띠 게 되였다.

원래 법도 국가라는 사회적집단의 존재 와 발전을 위한 국가성원들의 공동의 요 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행동질서, 규칙인 것만큼 도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적 본성, 자주적요구에 부합되게 규제되고 집 행되여야 한다.

그러나 착취계급사회에서는 법과 도덕이 일치할수 없다. 반동적착취계급의 법과인민적도덕이 일치할수 없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저들의 계급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놓을뿐아니라 저들의 리익을 대변한 도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전사회적인것으로 강요하면서 인민적도덕을 짓밟고 유린하며 그것을 저들의 법으로 탄압한다. 때문에 반동적착취계급사회에서착취계급의 리익을 대변한 법과 인민적도 덕이 일치할수 없으며 준법활동에서의 도덕성 즉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준법륜리가 형성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법의 옹호자들은 준법정신의 계급성을 부인하고 자본주의법이 전사회적인 유일한 법의식을 가진 사회성원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되는듯이 외곡하고있다. 그들은 준법정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내면적자발성이라고 하면서 사회성원들이 자기의 행동을 자체로, 도덕적으로 결정하고 법을 스스로 준수해나간다고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법의 강제적성격, 비도덕성을은폐하기 위한 궤변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법준수에서의 도덕적자각성이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건전한 준법륜리가 절대로이루어질수 없으며 오히려 준법륜리, 준법도덕이 외곡되고 말살되고있다.

인간의 본성에 맞는 참다운 준법륜리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을 구현하고 그것을 가 장 철저히 실현시켜주는 사회주의사회에 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정치가 실시되는 사회이다. 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와 도덕이 일치하게 되고 사회주의근로자들이 깨끗한량심과 의리로 사회주의법을 준수하고 지켜나가며 건전하고 혁명적인 준법륜리가형성되고 발전되게 된다.

준법륜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고상 한 도덕적풍모를 지니고 공민으로서의 책 임과 본분을 다하게 할뿐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데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준법륜리는 우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건전한 준법의식을 지니고 국가의 법규범 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킴으로써 공민으 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준수는 공민들의 준법의식에 의하여 좌우된다. 사 람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안다고 하여 그 것이 스스로 지켜지는것은 아니다. 법규범 과 규정의 자각적인 준수는 공민들의 마 음 즉 준법의식에 달려있다.

준법의식은 법을 존중하고 자각적으로 지키려는 마음이다. 이러한 준법의식은 법 규범과 규정이 국가와 자기자신의 리익을 위하고 사회전체의 안정과 건전한 분위기 를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것을 자각 할 때 이루어진다.

사회주의준법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 는것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이고 도덕적의무라는것을 자각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법을 스스로 자각적으로 지켜나갈 때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으며 조국의 륭성번 영과 자기자신의 보람찬 삶이 더 훌륭히 보장된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언제 어디서 나 그것을 스스로 지켜나가겠다는 높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한다. 뿐만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정된 법규범 과 규정을 스스로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과정에 그것을 체질화하게 함으로써 고상 한 준법도덕품성을 높이 발양하게 한다.

법을 존중하고 자각적으로 지키는 준법도 덕품성은 하루이틀에 저절로 형성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준법륜리를 잘 알고 실생활 에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주의준법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준법활동에서 나타나는 자신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돌이켜보고 량심에 비추어 반성해보면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 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행동을 일상적으로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해나가 게 한다. 그리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 기풍을 확립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하고 누가 보건말건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가지고 스스로, 자각적으로 지켜나가게 함으로써 국가와 조국앞에 지닌 자기의 도덕적책임 과 공민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준법륜리는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 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자유를 짓밟는 자본주의사회의 법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사회에 부정부패와 패륜패덕이 범람하게 하며 사람들을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로 부추기는 가장 반동적이고 추악한 법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의 법은 광범한 근 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반영 하고 그들의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담보해 주는 인간존중의 우월한 법이다.

우리 국가의 법의 사명과 임무는 단순히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국가의 법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 고상한도덕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건전하고 혁명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해나가게 함으로써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높은 인격과 품격을 갖추며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도덕적미풍의 화원이 활짝 꽃펴나도록 하게 하는 인민존중, 인간사랑

의 법이다.

준법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주의법으로 사람들의 사회적인격과 존엄을 보장해주고 사회적인간의 참다운 권리와 보람찬삶을 담보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이 고마운제도를 위하여 헌신하게 함으로써 모든것이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게 한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준법륜리의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식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